

원산지 제도 개요

I. 원산지제도의 개요

1. 원산지제도의 정의

수입상품(또는 수출상품)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
①판정하고, ②확인하고, ③표시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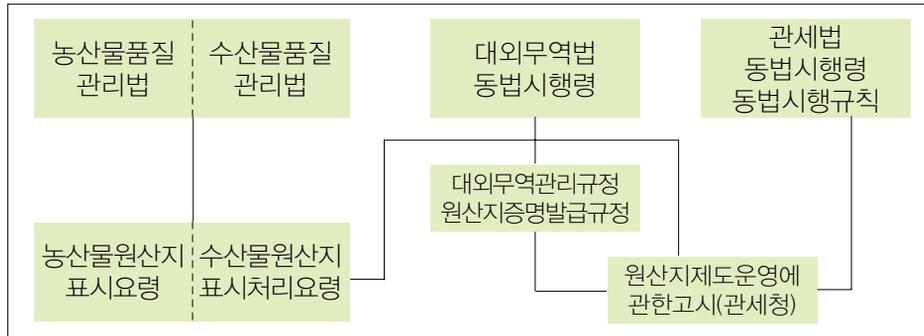
- ① 원산지 판정 : A국이 B국 부품을 수입해 상품 생산 후 한국에 수입할 경우, 동 상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결정하는 것
- ② 원산지 확인 : 통합공고에 의한 수입제한물품,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등을 단속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등 관계 자료를 제출받는 것
- ③ 원산지 표시 : 판정된 원산지를 최종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, 수입 된 당해 물품에 알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(인쇄, 주소, 라벨 등) 함
※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동 제도를 대외무역법에 도입·운영 중

2. 원산지제도의 필요성

- 소비자에게 정확한 물품정보(유명브랜드의 제3국 생산제품, OEM제품 등)를 제공함으로써 구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
- 특정지역의 생산품(예: 한국의 인삼·홍삼제품,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)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
- 덤핑관세 부과, 긴급수입제한조치, 쿼터제도 등 각종 무역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
- 현재 수출입통계는 해당물품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나, 원산지를 감안하면 보다 의미 있는 통계자료로 활용가능

3.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체계

- 대외무역법·시행령
 -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·판정 및 확인에 관한 기본법
 - 대외무역관리규정(산자부 고시) : 원산지표시대상물품, 원산지 세부표시방법, 세부판정기준 등을 규정
 -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(산자부 고시) : 일반수출물품 및 관세양허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·확인·발급·보관방법 등을 규정



○ 관세법 · 시행령 · 시행규칙

- 수입물품의 관세 부과 · 징수를 위한 원산지 결정(판정) 및 확인
-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
 -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(관세청 고시) :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관세법령의 원산지 관련사항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
- 농산물품질관리법 · 시행령 · 시행규칙 / 수산물품질관리법 · 시행령 · 시행규칙
 - 국산 농 ·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· 판정 · 조사
 -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· 판정은 대외무역법령의 표시 · 판정기준에 따름
 -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(농림부 고시) //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(해양수산부 고시) : 국산 농 · 수산물의 원산지 세부표시방법, 세부판정기준 등을 정함

II. 원산지의 판정 및 확인

1.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

- (1) 완전생산기준(Wholly Obtained Criteria) : 어떤 물품이 1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는 경우로서 생산국을 원산지로 함
 - 당해국에서 수확 · 채취 · 사육한 식물, 광물, 동물 또는 생산된 경우완전생산물품인 경우
 - 당해국에서 생산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 나라에서 가공한 완제품을 말함
- (2) 실질적변형기준(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) : 수출입물품의 생산 · 제조 · 가공과정 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, 최종적으로 “실질적 변형”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국으로 함. 단, “단순한 가공활동”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(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)
 - ※ “단순한 가공활동”이란 판매목적의 물품 포장활동,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가공활동,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예외적으로 단순가공에 포함되는 가공활동 등을 말함(동 규정 제6-

3-1조 제7항)

- “실질적 변형”이란 당해국에서의 제조·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(HS 6단위기준)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함(대외무역관리규정 제6-3-1조 제2항)
- 세번변경기준 : 당해국에서의 제조·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
- 부가가치기준 :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함
- 가공공정기준 : 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켜 주는 공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함
- ※ 대외무역법령은 원칙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“실질적 변형”의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, 일부 품목(카메라류, 의류 및 가축류)에 대해서만 부가가치기준·가공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

2. 원산지 사전판정 및 이의신청

(1) 원산지 사전판정 :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등은 수출 또는 수입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사전판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(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)

- 요청서 (HS 품목번호, 품목명(모델명포함), 요청사유,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포함)
- 견본 1개(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물품의 카탈로그 또는 사진 등 제출 가능)
- 기타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 (물품의 제조공정명세서, 완성품 제조에 소요된 모든 부품·원료의 HS 품목번호, 원산지 등)

(2) 이의신청 : 산자부장관은 동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사전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 장관 이의제기(대외무역법시행령 제57조)

-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시·도지사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의 결정 또는 확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당해 처분청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하여야 함

3. 원산지의 확인

- 원산지확인 대상물품(대외무역관리규정 제6-3-5조 제2항): 대외무역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음
-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(물방역법상의 수입금지식물, 식

- 품위생법상의 우제류 동물의 것 등)
- 원산지 허위표시, 오인·혼동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
 - 기타 법령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(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상의 북한반입물품, 관세법상의 각종 특혜관세대상품목)
 - 원산지 확인서류(대외무역관리규정 제6-3-5조 제1항) : 원산지확인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등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원산지 확인을 받아야 함
 - ※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대상
- ① 과세가격(중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)이 15만원 이하인 물품
 - ② 우편물(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)
 - ③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·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
 - ④ 재수출조건부 면제대상물품 등 일시 수입물품
 - ⑤ 보세운송素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
 - ⑥ 물품의 종류·消費絃형상 또는 그 상표·생산국명·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
 - ⑦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

III. 원산지 표시제도(Marking of Origin System)

1. 원산지표시제도 개요

- 우리나라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부터 동 제도를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도입·시행
- 수입물품 중 원산지를 표시하여야하는 물품은 HS 4단위 기준으로 653개 품목(농수산물 170개, 공산품 483개)으로 총품목수 1,244개의 52.5%(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-1)

2. 당해물품 표시 원칙

- 원산지 표시는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수입하고자 하는 당해물품에 견고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. 다만 다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물품이 아닌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음
 -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: 냉동옥수수, 밀가루, 주류 등
 -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: 당구공, 콘택트렌즈, 집적회로 등

-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당해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: 귀걸이 등 패션상품 (단, 라벨, 스티커 등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가 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)
- 원산지 표시비용이 당해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: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
-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,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 않았으나 포장,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: 비누, 칫솔, Video Tape, 진공포장된 1회용 의료기기 등
-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

3. 원산지 표시방법

(1)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

-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글·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
 - “원산지 : 국명” 또는 “국명 산(産)”, “Made in 국명” 또는 “Product of 국명”
 - * 원산지표시제도에 있어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나라, 국경선 밖에 있는 보호령 (예: 사이판), 자치권이 인정되는 경제적 독립체(예: 홍콩), 국제상거래 관행상 지역명이 원산지로 인정되는 지역(예: 스코틀랜드) 등을 의미함
 - “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, 주소, 국명”
 -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표시가 어려운 경우 국명만 표시 가능
 - *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(시계, 볼펜, 연필 등)도 국명만 표시 가능
 - “Brewed in 국명” 또는 “Distilled in 국명” 등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
 - * Manufactured by, Produced in, Fabricated in은 가능하나, Assembled in은 허용되지 않음
- 최종구매자가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
-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
 - 제조단계에서 인쇄(printing), 등사(stenciling), 날인(stamping), 낙인(branding), 주조(molding), 식각(etching), 박음질(stitching)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
 - 다만,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라벨(label), 스티커(sticker), 꼬리표(tag)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
-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표시 가능

- “United States of America”를 “USA”로 표기 가능
- “UK”(영국)는 가능하나, “JPN”(일본), “PRC”(중국)는 허용되지 않음
-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,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라벨, 스티커, 꼬리표의 방법으로 부착되는 경우에는 그 표시사항에 원산지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

(2)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원산지 표시

-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범위
 - 주문자 상표부착(OEM)방식으로 생산된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
 - 물품 또는 포장·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·상표·지역·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하여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
- 원산지 오인우려 물품의 표시방법
 - 당해물품 또는 포장·용기의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,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
 - 오인우려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, 풋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

(3) 단순가공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

-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은폐·제거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·가공업자가 완성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
-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(화장품 등)의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가 재포장 용기에 원산지 표시
-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 날개 또는 산물로 거래되는 수입물품(농수산물 등)의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물품 또는 판매용기·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, 풋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
- 수입된 후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제조·가공업자가 (당해 물품명)의 원산지 : 국명”의 형태로 원산지 표시
 - * 라이터는 중국산, 라이터케이스는 일본산인 경우 라이터케이스의 원산지표시 : “Case Made in Japan”

(4)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

-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(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6-3)
 - 공구세트, 개인용 여행세트, 구급상자와 구급대 등 15종의 세트물품
-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
 - 당해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는 개별물품과 세트물품의 포장·용기에도 원산지를 표시
 -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는 개별물품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고, 포장·용기에도 개별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하여 표시(예: Made in USA, Germany, ...)

(5) 수입 용기의 원산지표시

- 적용대상 :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
- 표시방법
 - 용기에 “(용기)의 원산지 : (국명)”에 상응하는 표시(예: “Bottle made in 국명”)
 -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,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

〈수입용기 원산지표시 방법〉

	채워진 상태로 수입	빈상태로 수입
재생가능 용기	○ 내용물품과 수입용기의 원산지를 용기에 각각 표시 - “Content made in 국명, Bottle made in 국명”	○ 당해 수입용기의 원산지를 용기에 표시 - “Bottle made in 국명”
1회용 용기	○ 당해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용기에 표시 - “Made in 국명”	○ 당해 수입용기의 최소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 표시 - “Bottle made in 국명” * 실수요자 수입시 표시 면제

5. 원산지표시의 면제

-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(대외무역관리규정 제6-2-2조)하고 있으나,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를 아니할 수 있음
 - ①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 되는 물품
세관장은 외화획득이행여부, 목적외 사용 등을 사후 확인할 수 있음
 - ②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·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

- ③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(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)
- ④ 판매 또는 임대목적이 아닌 물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(부분품 및 예비 부품을 포함)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(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)
- ⑤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(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)
- ⑥ 견본품(진열·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)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
- ⑦ 보세운송·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
- ⑧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
- 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
- ⑩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
- ⑪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
- ⑫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

6. 원산지표시의 확인

(1) 원산지표시의 확인·검사

- 수입통관단계에서는 세관장이 담당
- 국내유통단계의 수입물품은 시·도(시·군·구),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검사원에
서 다음사항을 확인
 - 원산지의 표시 여부
 - 원산지의 허위·오인표시, 손상·변경행위
 - 수입후 분할·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 여부
 -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등
- 수입물품에 대한 확인 검사후 위반사화에 대한 조치내용
 - 미표시, 허위·오인표시, 손상·변경표시 : 고발, 과징금
 - 수입후 분할·재포장물품의 원산지 미표시 : 과태료
 - 표시방법의 적정성 위반 : 시정조치, 과징금

(2) 원산지표시의 사전확인 및 이의제기

- 수입하기 전에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서류로 사전 확인 신청할 수 있음
- 관세청장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사전확인내용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
- 신청자가 원산지확인 통보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하고
- 관세청장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함

IV.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

1. 대외무역법에 의한 처벌

(1) 벌칙(법 제55조)

-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(미표시) 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자 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(허위·오인·손상·변경표시)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이하의 벌금

(2) 시정조치 및 과징금(법 제39조)

- 원산지 미표시, 허위표시, 오인표시, 손상표시, 변경표시 및 부적정표시 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또는 원산지의 표시·정정·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
(3) 과태료(법 제60조)

-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여 분할·재포장 또는 단순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날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/ 원산지표시 관련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

2.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처벌

(1) 벌칙(법 제34조의 2)

-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표시행위를 한 판매업자 또는 가공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

(2) 과태료(법 제38조)

- 농산물 및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

3.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처벌

(1) 벌칙(법 제53조)

-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동케 하는 표시를 한 생산·가공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

(2) 과태료(법 제56조)

- 수산물 및 수산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

4. 관세법에 의한 세관의 보세구역 반입명령

-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 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(법 제238조, 영 제245조). 다만, 당해 물품이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

5.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

-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·과장의 표시·광고(인터넷 또는 PC 통신에 의한 표시·광고 포함)를 하는 행위(법 제3조)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(법 제17조)에 처함

6.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

-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표식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식을 한 상품을 판매, 반포 또는 수입·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(법 제2조 제1호 라목)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(법 제18조 제3항)에 처함

▶ 다음호에 계속